

시험양식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험양식업의 목적과 사유							
시험양식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양식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선명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일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험양식업의 시기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